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토킹행위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14호)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64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1. 조배숙의원안	1
2. 박은정의원안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조배숙의원안	2
2. 박은정의원안	3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조배숙의원안

가. 발 의 자 : 조배숙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2.

다. 회부연월일 : 2025. 7. 3.

2. 박은정의원안

가. 발 의 자 : 박은정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3.

다. 회부연월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조배숙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
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2. 박은정의원안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 근거를 규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
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
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
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보복적 피
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톱킹행위
자¹⁾ 등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
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조배숙의원안	박은정의원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스토킹피해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톱킹행위자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스톱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u>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가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피해자-----.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 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 행위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행위자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⑧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 자”라 한다)에게 가 정폭력피해자등 및 피해자등의 주민등록 표 열람을 하지 못하 게 하거나 등·초본 을 교부하지 아니하 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 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⑧ 열람 또는 등·초 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 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 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	⑨ ----- ----- ----- -----가 정폭력피해자등 및 스토킹피해자----- ----- ----- ----- ----- -----.	⑨ ----- -----제2 항제2호 및 제2항제6 호----- --가정폭력피해자등 및 피해자등----- ----- ----- ----- -----.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	----- -----
⑨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	⑩ ----- ----- ----- ----- ----- ----- ----- ----- ----- ----- 1. 제6항 및 제7항에 ----- ----- ----- ----- ----- 제8항 및 제9항에 ----- -----	⑩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항·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권자>

근거조문	열람 및 교부
제29조제2항 본문	- 본인 - 세대원
제29조제2항 단서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	-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제2호	-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	- 다른 법령에 요청 근거가 있는 경우
제29조제2항제4호	- 다른 법령에서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초본 한정) -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 한정)
제29조제2항제6호	-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초본 한정)
제29조제2항제7호	-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³⁾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현행법 제29조제2항제5호의 사람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해당 신청대상자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열람 및 교부기관장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요건>

근거조문	제한요건
제29조제6항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②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③ 제한대상자(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를 지정하여 ④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장이 제한 가능
제29조제8항	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장이 ②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 제한대상자에 대해 제한 가능

4)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삭제 <2023. 5. 16.>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스토킹행위자 등을 교부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① 조배숙의원안은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도 스토킹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장이 해당 스토킹행위자가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② 박은정의원안은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⁵⁾·스토킹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성폭력행위자·스토킹행위자를 지정하여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 해당 제한대상자에 대해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및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 및 개정안의 제한조치 요건>

	신청권자	제한대상자	제한범위	열람·교부 기관장의 제한조치 요건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직계혈족등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
조배숙 의원안	가정폭력 피해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직계혈족등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행위자가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	
박은정 의원안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직계혈족등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제한대상자가 소송·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행위자		

개정안들은 스토킹행위자 또는 성폭력행위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⁶⁾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들과 같이 열람 및 교부 제한조치의 신청권자 및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는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자 보호 효과와 열람·교부를 통한 권리구제 및 행정사무 처리의 원활화 등 공익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때에 제한조치를 인정할 경우 소송 당사자의 소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⁷⁾과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의 방법 외에 소송 수행상 필요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점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6)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과거 송금내역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피해자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소장의 보정을 명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기재하였다.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 노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은 그 주소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7) 참고로, ‘소송 수행상 필요’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제한 신청이 있었다면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개정 시 제외되었음(「제38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록)」, 2021.6.8., pp.6-7.)

8) 「민사소송법」상 조사촉탁(제294조)를 통해 법원이 직접 관계기관으로부터 피고의 등·초본을 받는 방법 및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을 통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됨(국회입법조사처,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2025.6.26.)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법원에 의해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가 인정된 경매에 대해서는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타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교부제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